

- 제344회 정례회 -

조례안 등 심사 결과 보고서

(도시건설위원회 소관)

1. 심사의 목적

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입법 활동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

2. 심사 사무의 범위

【심사범위 : 조례안 등 4건】

번호	의안명	제안자	비고
1	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도시정책과	
2	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공원녹지과	
3	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광역교통과	
4	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	도시정책과	

3.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

○ 위원 : 4명

- 위원장 : 최훈중 위원, 부위원장 : 오승철 위원

- 위원 : 강성삼, 박진희 위원

4. 심사일정 : 2025. 12. 2.

5. 심사결과 심사결과:

번호	의안명	제안자	비고
1	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도시정책과	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
2	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공원녹지과	원안 가결
3	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광역교통과	원안 가결
4	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	도시정책과	* 의견 제시 (별첨 1)

별첨 1

의견청취 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

하남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근린공원)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의 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공원 경계 및 단절 문제: 현 계획은 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접 집단 취락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, 공원 경계 설정 방식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
- 연계성 확보 필요: 이성산성 등 지역의 중요 자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단절된 토지(집단 취락지역)를 포함하여 하나의 통합된 공원 체계로 조성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
- 대안의 실효성 부족: 공원 조성 후 단절된 지역을 위해 공원 내부에 차량 통행로(차길)를 개설하는 등의 방안은 임시적·보완적 조치에 불과하며,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
- 맹지 발생 우려: 공원 경계 설정으로 인해 일부 주민의 토지가 맹지로 전락하거나, 거주 이용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
- 형평성 확보 요청: 동일한 법적 기준 내에서 주민 간 불이익 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